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수정안 (구자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6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5. 9. 11.

발의의원 : 구자학 의원, 김상영 의원
(등 찬성의원 8인)

1. 수정이유
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상위 법령 미반영 부분을 반영하고,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안 제14조의 제목을 “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”으로 변경
- 나. 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내용을 개정
- 다. 안 제14조제4항을 신설

3. 기타사항 : 수정안 대비표(별첨)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4조의 제목을 “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 에서 “기금운용심의위원회
의 설치 및 운영” 으로 한다.

안 제14조의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장은 부군수, 부위원장은 정책사업단장이 되며, 위원은 문화체육과장 및 기금운용과 체육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관계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 이 경우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,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안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여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14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위원회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위원회의 역할은 군 체육회이사회에서 대행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4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위원장은 부군수, 부위원장은 정책사업단장이 되며, 위원은 문화체육과장 및 기금운용과 체육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관계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 이 경우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,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④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여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

서 명 날 인 서

의 원 명	서 명	날 인
구 자 학	구 자 학	구 자 학
김 상 영	김 상 영	김 상 영